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78

발의연월일: 2022. 9. 27.

발 의 자:김선교·성일종·박대수

권명호 • 이종배 • 김석기

구자근 · 안병길 · 서범수

태영호 · 강기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수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계획 수립 및 이에 필요한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 여, 정비사업을 통한 적기·적소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음.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신규 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사업 절차도 간소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있음.

이에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주민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여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을 촉진하 는 한편,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 여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나.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토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 다.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신탁사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
- 라.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심의, 조합총회를 각각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 마.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 하여 시장·군수등에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 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 바. 신탁사, 공기업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 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01조의8부터 제101조의10까지 신설).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2) 전단 중 "50"을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요청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 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 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 2.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로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 정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이하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 안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통지한 경우
- 2.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정요 청을 위한 요청서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청서의 처리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앞서 제16조제2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정비계획의 변경(정비구역의 변경도 포

함하며,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하나의 총회(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및 총회 의결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주거지역"을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으로 한다.

제5장의2(제101조의8부터 제101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행자(이하이 장에서 "공공시행자"로 한다) 또는 지정개발자(제27조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

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정비구역의 지정권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비사업의 명칭
- 2.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 개요
-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 4. 그 밖에 지정제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8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정제 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6

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1조의8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 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제101조의8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제9호는 제외한다)
 -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받아야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

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계획인가(최초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9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로 본다.
- ⑦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제3항부

터 같은 조 제5항까지, 제50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8항까지(제7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계획 인가및 고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	2
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	
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	
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	
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	
업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	나
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	
업지역 ·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	
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	
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	
업"이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 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 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 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 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 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 다) 또는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 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 다)으로 건설·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 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 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생 략) 3. ~ 11. (생략) <신 설>

2)
<u>50 이하의 범</u>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
다. (현행과 같음)
. ~ 11. (현행과 같음)

3. ~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요청

-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 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 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 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 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 한 경우
- 2.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 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 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 청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 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등소유 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하 "정비계획의 기 본방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 1.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 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통지 한 경우
- 2.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 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 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요 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 정요청을 위한 요청서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청서의 처리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제27조(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의 지정개발자) ① ~ ⑤ (현행

의 지정개발자)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 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 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 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50조의2(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 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① 정비 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0조제1 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인 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앞서 제16조제2항에 따라 결 정 · 고시된 정비계획의 변경(정 비구역의 변경도 포함하며, 제1 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에도 불 구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 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 께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저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 설비율)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2조제1호에 따 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 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 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하나의 총회(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 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 우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 유자 전체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및 총회 의결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	543	조(재.	건축	-사	업	Ę	들의		용.	적	률
	완호	화	밎	국	민	주택	백규	모	7	트탄]	건
	설1	1) 4	울)	1	_							

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 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 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 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1
<u>주거지역</u>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
<u>지역</u>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
례) 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행
자(이하 이 장에서 "공공시행
자"로 한다) 또는 지정개발자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
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이하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수 있다.이 경우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1. 정비사업의 명칭
- 2.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 개 요
-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 <u>방향</u>
- 4. 그 밖에 지정제안을 위해 필

 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8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정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 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면 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

<신 설>

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있다. 이 경우 제101조의8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 항에 따라 공공시행자 또는 지 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 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 다.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 행계획의 통합 수립) ① 사업시 행자는 제101조의8에 따라 정비 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9조 에 따른 정비계획과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

<신 설>

<u>획(이하 "정비사업계획"이라 한</u> <u>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u> <u>다.</u>

-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의 내용(제9호는 제외한다)
-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 행계획서의 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에 정관등과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받아야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5조제 3항 및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 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계 획인가(최초 정비사업계획인가 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제 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

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9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토지등소유자는 동의한 것으로본다.

-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 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 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정비사업계획 중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

인가의 고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인가의 고시로 본다.

①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 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제 3항부터 같은 조 제5항까지, 제 50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8항까지(제7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 2,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의소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외에 정비사업계획 인 가 및 고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